

EC의 에너지시장통합 추진현황

오는 '92년말까지 약 2년반 정도의 시한을 남겨두고 있는, EC(유럽공동체)경제통합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獨逸통일문제와 동구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그 흐름이 다소 주춤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EC위원회는 통합과 관련한 279개의 제안중 약 60%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한편 에너지분야에서의 시장통합 노력은 전력, 가스 및 세제 통합 등 주요 문제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992년까지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시장통합 목표달성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EC 경제통합의 배경과 발전과정

EC는 지난 1967년 7월의 통합조약(*Merger Treaty*)에 의거, 기존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최초의 회원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등 6개국. 그후 1973년에 英國,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가입함으로써 현재의 총 1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EC창설의 모태가 되는 ECSC는 지난 1952년 파리조약에 의거 창설되었으며, EEC와 EURATOM은 1958년 로마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통합조약의 기본골격이 대체로 로마조약에 근거한 것이며, EC가 EEC의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EEC가 창설된 1958년을 보통 EC의 출범년도로 보고 있다.

EC는 지난 1958년 EEC창설후 역내적으로 회원국간

상호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분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외적으로는 회원국 보호라는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과 역내 사양산업에 대한 대외보호체제를 강화해 왔다. 따라서 '60년대와 '70년대초까지는 관세동맹의 결성, 역내시장의 확대 등 팔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와 그로 인한 세계적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역내 각국은 경제정책을 自國 보호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통합의 움직임도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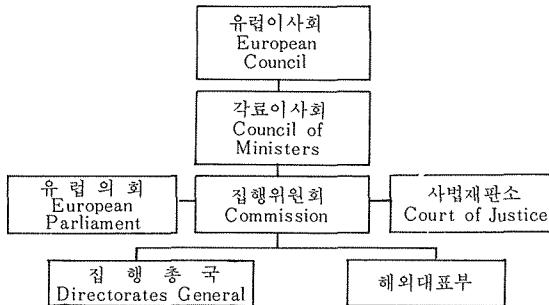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유럽은 2차석유위기의 여파로 여전히 고실업, 인플레이션, 저성장의 三重苦를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美國과 日本 등 역외국가에 비해 산업경쟁력은 물론 첨단 분야에서도 뒤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경제성장도 둔화되었다. 이같은 현상의 반작용으로 EC는 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역내시장 통합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지난 1982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EC이사회는 역내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1985년 6월 이사회에서는 1992년까지 역내시장단일화를 완성한다는 「역내시장통합백서」를 채택하였다. 이듬해 2월 EC통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 SEA*)가 EC위원회에 제출되어, 1987년 7월 정식으로 발표됨으로써 역외국가에게 EC통합이 실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역내시장 통합백서」에서는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분류, 이를 저해요소의 철폐를 위한 행동계획을 설정하고 추진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시장통합의 저해 요소로는 ① 물적, 인적 자원의 자유이동을 막는 물리적 장벽, ② 재화,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자유 이동을 막는 기술적 장벽, ③ 조세장벽 등이다. 단일유럽의정서(SEA)에서는 EC통합의 법적 모태인 로마조약을 개정하여 경제통합의 목표기간을 오는 '92년까지로 명시하고, 보다 신속한 정책결정방법의 채택과 통합영역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위하여 정책결정 표결 방식을 특정다수 결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중대한 변화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C의 기구조직도



EC의 조직구성은 회원국의 頂上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그 밑에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EC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를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C집행위원회(Commission) 및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EC집행위원회 산하에는 22개의 집행총국(Directorates General)을 두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는 제17총국(Directorates General XVII : DG17)에서 담당하고 있다.

2. EC의 에너지시장 통합

(1) 통합의 배경과 EC의 에너지정책 목표

EC역내의 총 에너지시장규모는 소비물량 측면에서 볼 때, 1988년 현재 약 10억 8천만 TOE로 美國의 약 60%, 日本의 3배 수준이며, 이중 石油비중이 47%, 석탄이 21%, 가스 17%, 원자력 11% 순이다.

당초 에너지분야는 EC의 경제통합의 추진논의 과정에

서 에너지가 국가안보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합의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EC의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되어감에 따라서 에너지시장도 피할 수 없는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EC위원회는 지난 1986년 9월 통합의 대상으로 에너지시장을 명시하고, 1995년까지의 EC에너지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하에 에너지문제를 전담하는 에너지총국(Directorates General XVII : DG17)을 설치하였다.

1986년 EC위원회가 설정한 1995년 EC 에너지정책 목표는 :

첫째, 최종에너지의 소비효율을 현재보다 최소한 20% 향상.

둘째, 石油소비는 총에너지소비의 40% 이하로 유지, 石油 순수입량은 EC 총에너지소비의 1/3 이하로 유지.

셋째,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공급원의 다양화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비중을 현수준(약 17%)으로 유지, 석탄등 고체연료의 소비비중을 확대.

넷째, 石油 및 가스에 의한 발전비중을 15% 이하로 축소.

다섯째, 재생에너지지원의 활용을 중대시켜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밸런스에 대한 기여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시장의 통합 노력과 에너지교역 장벽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油價폭락, 체르노빌 원전사고, 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자, EC의 에너지정책목표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을 위해 종래의 가스발전 억제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고체연료 소비확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에너지시장 통합의 추진현황

EC위원회는 1988년 5월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법을 보고서로 작성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1985년에 채택된 「역내시장 통합백서」의 에너지분야 관련사항 적용 시행.

- 기술적장벽의 제거: 공공조달시장의 개방, 제품규격 및 기준의 통일 등

EC 에너지 시장 현황 (1988)

(단위 : 백만TOE)

| | 네덜란드 | 西 獨 | 英 國 | 프랑스 | 기타(8개국) | 計 | 美 國 |
|-----|------|-------|-------|-------|---------|-----------|--------|
| 石 油 | 34.4 | 114.8 | 80.0 | 85.7 | 196.7 | 511.3(47) | 789.2 |
| ガス | 29.6 | 43.0 | 47.8 | 23.7 | 47.3 | 191.4(17) | 460.2 |
| 석 탄 | 8.4 | 73.2 | 65.6 | 17.3 | 63.8 | 228.3(21) | 479.8 |
| 원자력 | 0.9 | 32.3 | 13.5 | 54.6 | 20.8 | 122.1(11) | 144.8 |
| 수 力 | 0.0 | 4.1 | 1.4 | 15.6 | 21.7 | 42.8(4) | 66.8 |
| 計 | 73.3 | 267.4 | 208.3 | 196.9 | 350.0 | 1095.9 | 1940.8 |

<자료> BP통계, 1989. 7.

- 재정적 장벽의 제거 : 에너지제품에 대한 각국의 부가세제, 소비세제조화

② EC법(로마조약)을 에너지분야에 엄격히 적용.

- 재화의 자유이동
- 상업성이 있는 국가독점 사업의 조화
- 공정한 경쟁의 유도
- 국가보조제도의 조화

③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④ 에너지와 관련된 특정분야에 대한 적정시책의 추진.

- 에너지비용, 가격정보의 공개
-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

지난해 말까지 EC위원회에서 제시한 장애요인의 제거와 시장통합을 위한 노력은 EC회원국간에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회원국간 정치제도, 조세제도 및 각국의 에너지전략과 자원여건 등의 차이로 통합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獨逸과 프랑스간의 전력시장 개방, 가스시장 개방을 위한 가스의 공동수송 시스템(Common Carrier)의 채택, 石油의 공동비축, 에너지기업의 합병(M & A)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배 등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石油부문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 19개 항목이 통합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미 경쟁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비축의무의 통일화 문제와 함께 석유제품의 세제조화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EC위원회는 최근 石油세제 통합을 위한 회원국간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석유기업의 측면에서는 지난해 9월 석유산업동맹(EPIA)을 결성하여 시장통합에 따른 제문제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석탄은 대부분의 EC회원국에서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

쟁력이 떨어져 있다. 특히 '86년 유가하락 이후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C각국은 자국석탄산업에 대해 제도적인 국가보조를 시행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꾀하고 있으나, 이것이 EC통합의 장애로 지적되었다. EC위원회는 대상이 되는 西獨, 스페인에 대해 보조금제도를 폐지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EC의 이같은 요구가 서독과의 심한 대립을 가져와, 양측에 의한 타협이 모색되고 있다.

EC위원회는 가스가격정보의 공개, 가스시장의 개방, 가스세제의 조화, 가스산업기반의 구축 등 4가지를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가스가격정보의 개방은 회원국의 원칙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가스시장 개방을 위한 공동수송시스템(Common Carrier)의 도입에 대해서는 역내 가스생산, 유통업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C 컨설턴트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별 가스가격차를 축소하고, 가스시장을 확대하며, 가스의 생산 및 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을 있으나, 대소비처 이외의 소비자에 대한 가스가격 상승, 수요가 불투명한 분야의 투자위축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전력시장의 경우, 통합을 위해 사업독점의 철폐, 전력요금과 비용의 공개, 전력세제의 조화, 환경 및 기술기준의 조화, 전력산업 기반의 정비, 전력사의 재정·금융상의 조화를 중점사항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수송 및 판매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독점의 철폐에 대해서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긍정적이며, 프랑스는 자국잉여전력의 수출을 노려 찬성하는 반면, 스페인과 서독은 자국산업 보호라는 원칙과 맞물려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